

# KIWOOM Digital Asset Issu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디지털자산/원자재 심수빈 sb.shim@kiwoom.com

| 디지털자산 김현정 hyun.k@kiwoom.com

## [#가상자산] 18.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시작

### • 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와 주요 내용

- 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확정.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계좌 발급 지원 예정

- 이 외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토큰증권(STO) 제도화 시 기대 효과 등을 논의

### •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

- 비영리법인은 법인 계좌 발급 시 비영리법인TF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의 종류는 제한되며 현금화는 수령 직후 자체없이 진행

### • 가상자산거래소 매도 가이드라인

-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 가이드라인은 이해상충 방지 및 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점. 이에 매도가 허용되는 대상과 그 요건 및 방법을 명시

### 4차 가상자산 위원회 개최와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위원회의 역할

: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책 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언급되는 가운데 5월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2월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발표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법집행기관을 시작으로 2025년 2분기 중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의 법인 계좌 개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2025년 하반기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법인의 전면적인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해서는 외환이나 세제 등 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법집행기관과 달리 법인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여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를 구성해야 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했다. 이후 가상자산위원회와 은행,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등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 때 각 주체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4차 회의에서는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확정되는 등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부분들이 정리되었다. 이에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가 발행될 예정인 만큼 가상자산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토큰증권(STO) 제도화 시 기대효과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밝혔다.

#### 가상자산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시기	허용 범위	허용 대상	보완장치
법집행기관(진행중)			
상반기	매도 거래	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학교법인 (2025년 6월) 가상자산거래소(2025년 6월)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마련 이용자 이해상충방지
하반기	매매 거래	상장회사·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자금세탁방지 보완 등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시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금세탁방지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이는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지난 3월 진행된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장치 강구, 거래 모니터링 체계 보완 필요 여부 점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5월 발표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무기명 기부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지갑간 이전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 거래소, 법인이 기부금과 관련한 고객확인 등을 수행해야 하며,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 은행과 거래소는 각각 가상자산 현금화 자금 출금 내역 점검, 가상자산 기부 상세 내역 및 현금화 내역 일치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는 비영리법인에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며, 만약 비영리법인이 이를 거절할 시 실명계정 연결 거부, 실명계정을 통한 입출금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후 계좌발급이 가능한 만큼 가이드라인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가상자산위원회가 예시로 들었던 내부통제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관련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 제한, 현금화 시기 및 매각 방법 사전 설정 등이다. 이에 금융당국,

비영리법인, 은행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TF는 가상자산위원회의 예시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비영리법인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접수 시 기부자의 신원, 기부 목적, 기부대상 가상자산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 중 기부대상 가상자산은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공동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기부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가상자산 수령 이후 이를 자체 없이 처분해야 하나, 사전심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처분 시기는 별도로 설정이 가능하다.

물론,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상자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비영리법인은 내부통제 수단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되고, 허용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수, 해당 기관의 보유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비영리법인 매각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허용 대상	외감법인이면서 5년 이상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 최근 3년간 감사 의견 “적정”, 국세기본법 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미해당 등
가상자산 종류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
주요 규율 목적과 내용	내부통제장치 확보 (내부 심의 기구를 통해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 사전 검토)
자금세탁 방지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하여 기부금 관련 고객확인 등 수행
기대효과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 지원 + 건전한 가상자산 기부문화 확립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관련 주요 주체별 역할

구분	내용
은행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연결 신청 시점에 비영리법인 요건 충족여부 및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 심사 - 실명계정 연결 재심사 시점(예: 매 1년)에 비영리법인 요건,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 및 가상자산 현금화 자금 출금내역 점검
가상자산거래소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시점에 가상자산 기부 상세내역 및 현금화내역 일치여부 등 점검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가상자산 기부금 접수·현금화를 위한 모범사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기부접수	기부자 신원, 기부목적, 기부대상 가상자산* 등 확인 * 기부대상 가상자산: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공동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DAXA 홈페이지-자율규제통합정보-회원사거래지원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기부심의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가상자산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심의 * 기준 심의기구에 가상자산 등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기부수령	가상자산 거래 전용계좌 개설 및 실명계정 연결 후 기부자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 기부수령*
현금화	*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무기명 기부 및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지갑 간 이전 제한
세무·회계 처리	가상자산 수령 후 지체없이 처분(사전심의기구 결정에 따라 처분시기 별도 설정 가능) '금전 외 자산'의 기부로 세무처리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가상자산거래소 매도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매각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보유한 가상자산 일부를 매각하며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거래소는 가상자산 시장을 운영하는 자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및 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매도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제한되고 구체적인 매도 방법과 공시 절차가 제시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소가 매각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기준 상위 20위 이내에 해당하고, 3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된다. 또한, 매각 목적은 투자나 신사업이 아닌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혹은 법정 의무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로 인한 원화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었다.

매각을 진행하기에 앞서 거래소는 매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준법 감시인의 검토를 받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매각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거래소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분산 매도를 진행해야 하며, 하루에 매도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전체 계획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매각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공시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 때 가상자산거래소는 매도 개시 예정일 최소 3영업일 이전에 매도 대상과 기간 등을 사전 공시하고, 매도 완료 후에는 5영업일 이내에 매각 결과 및 현금화 자금의 사용 내용을 사후 공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별 내규화 및 각 사업자 인적·물적 여건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6월 이후인 하반기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사례와 운영 경비 충당이 필요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매도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올해 이들의 참여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대해 일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별 로드맵에서 첫번째 단계인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 거래 허용 이후 2단계인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지난 5월 2일 하반기 내 2단계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이번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통한 시장 참여 사례가 추후 2단계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의 계좌 설립 추진 방향성과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오는 6월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의 가상자산 시장 변화 여부에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분류	내용	
매도 허용 대상 및 요건	허용 대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규·갱신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갱신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로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사업자'). 단, 영업 종료를 선언하였거나 영업중단 상태에 있는 사업자는 제외
	요건	①법인세 등 세금 납부, ②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③기타 법정의무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
매도 대상	대상	국내 원화거래소(5사)의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종목*으로 한정
매도 방법	매도 시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매도 완료
	매도 장소	2개 이상 원화거래소(이하 '매도거래소') 이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 각 '분산매도 거래소'에 분산 매도
	매도 방법 및 규모	매도 개시 전 매도 가능한 물량, 호가 등을 제한
내부통제 절차	이사회 결의	매도사업자의 소관부서가 매도 목적, 대상, 시기, 규모 등을 포함한 매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후 이사회 안건 상정 준법감시인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매도 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검토
	매도 실행	이사회 승인·의결한 매도계획에 따라 매도사업자의 소관부서가 독립적으로 실행
공시	결과 보고	소관부서는 매매결과보고서와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고, 준법감시인 등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매도사업자는 매도를 전후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 플랫폼(매도사업자, 매도거래소, DAXA의 각 홈페이지) 등에 공시

자료: 금융위원회, DAX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